

제38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4월22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10785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89)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1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1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06)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30)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2)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1)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0)
11.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9)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7)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83)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08)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2)
2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9)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94)
23.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721)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08)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6)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6)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27)
29.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7857) ... 2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9) 2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2)	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5)	2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6)	2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0)	2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2)	2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1)	2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6)	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0)	2
11.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3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0)	5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2)	5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9)	5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5)	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7)	5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3)	5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8)	5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2)	5
2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9)	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4)	5
23.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1)	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4)	5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8)	5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6)	5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6)	5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7)	5
29.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5

(15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태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785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189)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6)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0)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2)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1)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0)

11.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김태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2일, 3월 24일과 4월 22일에 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에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 그리고 의원 본인이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에게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를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이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 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여 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2022년 5월 30일로 하되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고려한 위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이전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법률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예?

○강은미 위원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예,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지만 한 가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의결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개헌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접수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60건입니다. 이 중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징계안은 6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징계안은 총 15건, 과거 국회법에 따라 윤리 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는 8건,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판단된 경우는 29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징계안 277건이 폐기되었는데 4건 중 3건은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폐기되었습니다.

공직자는 감사원이라는 감사기구가 있어서 조

사가 가능하지만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벌 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기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윤리감독관 도입, 윤리심판원 신설·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좀 더 과감해야 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그런 면에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리감독관 도입이나 윤리심판원 신설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태년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제가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다른 분들께서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 준용하고, 그 적용을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을 가지고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 등 엄중 징계하고 처벌하게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활동을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관한 그 징계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법을 100% 적용하고, 더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업무 직무 수행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것을 회피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하는 방식이 됩니다.

대전제는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에 관해서 사전 신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지 이것을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180만 명이고—포함해서—우리 국회의원 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윤리심판기구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효율성 문제인데 그 문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인원 충원과 기관의 확충 관련해서는 추후에 심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도 모든 공직자와 동일하게 심사를 받고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추후에 논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년 강은미 위원님의 아주 좋은 의견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의 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02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06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239)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247)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283)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308)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12)
2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9)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694)
23.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1)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77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008)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96)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6)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327)
29.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위원장 김태년 이어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9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17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강은미 위원 국회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9월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법 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 연구 및 인력 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기후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 관련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개별 상임위 차원의 법률안 심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범부처 차

원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논의 그리고 체계적인 법률안 심사 처리를 위해 국회법 44조에 따라서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좀 서둘러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에서 이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하루 빨리 논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태년 지금 또 추가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강은미 위원님의 의견도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9일 전에 전체회의가 한 번 더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위원장 김태년 오늘 고별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회의가 한 번 더 있다고 그래서요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민정	강은미	곽상도	김성원
김영진	김원이	김태년	문정복
문진석	배현진	신원식	윤건영
이성만	이소영	이용	이용빈
전재수	정희용	조수진	조승래
주호영	홍성국	홍정민	

○청가 위원(1인)

박상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입법심의관	공춘택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춘석
입법차장	전상수
사무차장	조용복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개선	김용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2021. 4. 22.
	조승래	문정복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태영호·권성동·권영세·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주경·이명수·이종배·이주환·임이자·정희용·조경태·허은아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박대출·윤창현·황보승희·권영세·권명호·김영식·김정재·김상훈·이주환·김태호·박성중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박대출·윤창현·황보승희·권영세·권명호·김영식·김정재·김상훈·이주환·김태호·박성중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병욱·정성호·윤건영·안민석·송기현·임종성·안규백·민형배·박찬대·이용선·이용호 의원 발의)

2월 2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민형배·김민철·김철민·변재일·양정숙·양향자·이정문·임종성·장경태·홍익표·황운하 의원 발의)

2월 2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3. 4. 정운천·서일준·배준영·홍문표·이종성·권명호·하태경·박진·최춘식·박대수·하영제·김형동·서영석·김성원 의원 발의)

3월 5일 회부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이종배·성일종·홍문표·이종성·김상훈·이영·김형동·김석기·김예지·김승수 의원 발의)

3월 1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주영·김승원·홍기원·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박홍근·이수진(비)·양기대·이은주·설훈 의원 발의)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민석·박상혁·이형석·최혜영·인재근·윤재갑·강병원·이상현·강득구·

홍정민 · 윤영찬 · 송영길 · 박홍근 · 강준현 · 서동용 · 김성주 · 맹성규 · 조승래 · 송재호 · 윤건영 · 남인순 · 강민정 · 이탄희 · 최종윤 · 홍성국 · 서영교 · 박영순 · 정춘숙 · 김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득구 · 강민정 · 김진표 · 김희재 · 남인순 · 문진석 · 송갑석 · 이동주 · 이성만 · 이재정 · 주철현 · 홍성국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은미 · 류호정 · 민형배 · 배진교 · 송갑석 · 심상정 · 용혜인 · 이은주 · 장혜영 · 조오섭 · 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정일영 · 김교홍 · 김수홍 · 김진애 · 송기현 · 양정숙 · 윤후덕 · 이광재 · 이탄희 · 최기상 · 허종식 · 홍성국 의원 발의)

3월 2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9. 유의동 · 金炳旭 · 김형동 · 강대식 · 김웅 · 최춘식 · 안병길 · 정진석 · 권성동 · 윤창현 · 이용 의원 발의)

3월 30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김기현 · 조명희 · 황보승희 · 윤주경 · 이양수 · 신원식 · 김승수 · 이종성 · 윤두현 · 권명호 · 이현승 · 송언석 · 정경희 · 김웅 · 양금희 · 박대출 · 김예지 · 김상훈 · 김선교 · 강대식 의원 발의)

3월 3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1. 4. 6. 윤영덕 · 강민정 · 홍정민 · 강은미 · 박찬대 · 조오섭 · 정필모 · 권인숙 · 윤준병 · 민형배 · 김승원 · 이용빈 의원 발의)

4월 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4. 9. 황운하 · 김승원 · 김민철 · 김희재 · 민형배 · 홍성국 · 김수홍 · 이장섭 · 김경만 · 강민정 의원 발의)

4월 1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이영 · 권영세 · 김예지 · 김용환 ·

박대수 · 윤창현 · 이주환 · 조명희 · 지성호 · 한무경 · 홍문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민형배 · 권인숙 · 김민철 · 박상혁 · 송재호 · 안규백 · 이정문 · 이해식 · 장경태 · 홍익표 · 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한병도 · 김민철 · 임호선 · 민병덕 · 이명수 · 박상혁 · 윤영찬 · 김승원 · 이상민 · 오영환 · 김수홍 · 윤준병 의원 발의)

4월 1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조승래 · 김민철 · 한준호 · 홍정민 · 강병원 · 박영순 · 기동민 · 김민석 · 박홍근 · 이규민 · 서영석 · 김진표 의원 발의)

4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박대출 · 황보승희 · 김영식 · 권명호 · 권영세 · 이주환 · 김태호 · 윤창현 · 김상훈 · 박성중 · 김정재 의원 발의)

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배진교 · 강민정 · 강은미 · 권은희 · 김교홍 · 류호정 · 심상정 · 용혜인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 최강욱 · 허종식 · 양정숙 의원 발의)

3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강민정 · 최강욱 · 양정숙 · 강은미 · 류호정 · 용혜인 · 허종식 · 심상정 · 황운하 · 장혜영 · 임호선 · 조정훈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김기현 · 조명희 · 황보승희 · 윤주경 · 이양수 · 신원식 · 김승수 · 이종성 · 윤두현 · 권명호 · 이현승 · 송언석 · 정경희 · 김웅 · 양금희 · 박대출 · 김예지 · 김상훈 · 김선교 · 강대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4. 9. 소병훈 · 김경만 · 홍정민 · 박상혁 · 조오섭 · 허영 · 강득구 · 이원택 · 이규민 · 신동근 · 서영석 · 설훈 의원 발의)

4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2. 권영세 · 박대출 · 성일중 · 양금희 · 윤창현 · 이명수 · 이영 · 정찬민 · 지성호 · 태영호 의원 발의)

4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박성중 · 김영식 · 황보승희 · 지성호 · 정희용 · 권성동 · 서범수 · 이용 · 조경태 · 이종성 · 허은아 의원 발의)

4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김도읍 · 구자근 · 권명호 · 강기윤 · 김태흠 · 박성민 · 양금희 · 윤창현 · 이영 · 이용 · 추경호 의원 발의)

4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385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1. 3. 4. 의장 제의)

3월 4일 회부됨

제385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1. 3. 24. 의장 제의)

3월 24일 회부됨

제385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1. 3. 25. 의장 제의)

3월 25일 회부됨

제386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1. 4. 19. 의장 제의)

4월 19일 회부됨

○의견서 제출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 동의 요청

(2021. 4. 5. 의장 제의)